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7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한창민 · 정혜경 · 손 솔
신장식 · 용혜인 · 윤종오
황운하 · 김재원 · 최혁진
김종민 · 김남근 · 서미화
김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장의2 신설).

다.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9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연금사무대행기관

제100조의6(연금사무대행기관) ①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

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사무(이하 “연금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연금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연금사무를 중단한 경우
3. 연금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

소된 연금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연금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제100조의8(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연금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연금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100조의9(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연금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0조의10(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9조의 제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를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0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u>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2 연금사무대행기관</u> <u>제100조의6(연금사무대행기관) ①</u>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
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
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국민
연금에 관한 사무(이하 “연금
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금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
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연
금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연금사무대행기
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
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
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
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④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연금사무를 중단한 경우

3. 연금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연금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7(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연금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신 설>

제100조의8(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연금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연금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100조의9(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연금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

<신 설>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
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
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
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
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
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

다.

제100조의10(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연금사
무대행기관이 제100조의6제1항
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9조(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약해지, 계약연
장 거절 또는 그-----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

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u>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③ (생략)	----- ----- ----- -----<u>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00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u> <u>잔</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